

세무과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 21세기 참 시민의식 함양교육 특강수당 (예산서 232p)

□ 검토사항

- 참 시민의식 함양교육 특강 수당으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예산의 계상 내역은 건전한 자진납세 풍토의식 함양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본 강의의 효과성에 대하여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또한 강사수당단가로 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총무과의(156페이지) 시민교양강좌 강사수당의 단가는 1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초과지급 여부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2. 지방세 통합전산화용 DB 프로그램 구입 (예산서 232p)

□ 검토사항

-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으로 232페이지에 약 1천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234페이지를 보면 지방세통합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7천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동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기존의 지방세 프로그램을 대신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새 지방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는 기존의 지방세 프로그램유지보수 비용은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세입예산안 검토보고서

□ 전년대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일반회계)

(단위:천원)

구 분	'99년도 본예산	2000년도 본 예산	증(△)감	비 고
세입예산	122,477,729	151,407,296	28,929,567	

1. 세입예산안 전반

□ 검토사항

- 2000년도에는 주행세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13.27%에서 15%으로 증액되고 도세 징수금교부제도도 변동되어짐.

현 예산안의 세입은 이러한 변화 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는데 세입 총괄부서에서 위의 3가지의 세입구조가 변동됨으로써 어느 정도 세입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지방교부세 교부율이 13.27%에서 15%으로 증액됨. 법정률 인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액이 지자체별로 평균 20% 정도, 5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매일신문 기사)

주행세를 지방세원으로신설, 교통세액의 3.2%를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부과 징수키로 했다.

도세 징수금교부제도가 기존의 인구수에 따라 징수액의 30~50%을 배분하는 방식에서 변경하여 교부금 요율을 변경.

2. 세외수입으로 경영수익사업 (예산서 25p, 32p)

□ 검토사항

- 골재채취 수입예산으로 내년예산에 26억원이 계상되어 있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적에서 보면 10월 31일까지의 골재채취 수입액은 1백만원에 불과한데 과연 26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
- 녹슬은 철조망 판매대금으로 약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99년도에는 3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음. 내년에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및 각종 밀레니엄 기념사업 등으로 동 상품의 판매를 늘리는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판매대금을 낮게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됨.

3. 과년도 수입(예산서 33p)

□ 검토사항

-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액으로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3억1천3백만원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105페이지)에 의하면 '99년도 10월말 현재 세외수입부과의 미수납액이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음.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이 금액의 상당수가 내년에 징수가 이루어질 경우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액이 과소하게 계상되어지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98년도 과년도 수입 조정액으로 31억을 정하고 10월말 현재 5억4천5백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세외수입 과년도 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에 대한 것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세 목	조정액 (A)	징수액 (B)	미 수 납 액		징수율 (B/A)
			건수	금액	
세외수입총계	36,835	32,890	10,035	3,945	89.2
과년도수입	3,177	545	8,090	2,632	17.1

4. 예금 이자 수입 (예산서 27p)

□ 검토사항

- 예금이자수입액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액으로 37억원, 기타이자수입액으로 7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9년도 10월말 현재 공공예금 이자수입액으로 43억5천만원, 기타이자수입액으로 1억2천만원이 징수되었음.

예금이자수입액을 올해분 10개월치 보다 낮게 계상한 근거가 있는지와 예금이자수입액이 타 시군이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적은데 대해 논의가 필요함.

회계과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총무국 세출예산 증감내역

(단위:천 원)

부 서 별	'99 년도 본 예 산	2000년도 본 예 산	증(△)감액
계	26,505,777	31,468,222	4,962,445
회 계 과	21,396,548	23,125,942	1,729,394
문화체육과	5,109,229	8,342,280	3,233,051

1. 각종 현수막 및 플레카드제작 (예산서 210p, 220p)

☐ 검토사항

- 각종 현수막 및 플레카드 제작비용이 2000년도 예산안에 50,000천원이 반영된 것에 대하여 어떠한 현수막과 플레카드를 제작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에어컨디셔너구입 (예산서 276p~278p)

☐ 예산반영 현황

구 분	예산액	비고	구 분	예산액	비고
기획실	1,000	신규	금촌2동	2,600	신규
법원읍	1,200	신규	법원읍	5,500	대체
월릉면	3,000	신규	조리면	5,500	대체
파평면	4,500	신규	적성면	5,500	대체

☐ 검토사항

- 에어컨디셔너 구입의 단가 1,000천원에서 5,500천원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와 법원읍의 경우 신규 및 대체구입으로 법원읍이 총 2대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국내여비 (예산서 268p)

☐ 검토사항

○ 각 부서별 국내여비 지급 인원은 다음과 같다.

부 서 별	관내여비 (A)	관외여비 (B)	증 감 (B-A)	비 고
의 회 사 무 국	17	17	-	
기 획 실	23	23	-	
총 무 과	38	38	-	
시 민 과	24	15	△9	
세 무 과	48	48	-	
회 계 과	30	41	11	
문 화 체 육 과	34	34	-	
사 회 복 지 과	25	25	-	
환 경 보 호 과	43	43	-	
기 업 지 원 과	20	20	-	
농 축 산 과	23	23	-	
산 림 과	11	-	△11	
건 설 과	22	22	-	
도 시 과	21	21	-	
건 축 과	13	13	-	
교 통 행 정 과	23	23	-	
상 하 수 도 과	4	4	-	
지 적 과	23	3	△20	
보 건 소	50	57	7	
농 업 기 술 센 타	37	37	-	

○ 통상적으로 시본청의 경우 관내여비는 월1회 일반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으로 5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고 관외여비는 필요인원이 파주시 지역이외의 지역을 출장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는 공히 1일당 25,000원을 계상하였음.

따라서 관내여비는 일반직 전직원이 대상되지만 관외여비는 전직원 또는 특정 직원만이 국내여비 대상이 될 것임.

그러나 회계과는 11명, 보건소 7명이 관내여비 인원보다 관외여비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4. 문산읍 청사진입로 부지 (예산서 294p~295p)

□ 예산반영 현황

○ '99년도 본예산 : 14,335천원

·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17-32) : 9,675천원($600\text{천원} \times 645\text{m}^2 \times 0.025$)

·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22-2) : 4,660천원($400\text{천원} \times 466\text{m}^2 \times 0.025$)

○ 2000년도 본예산 : 304,121천원

·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17-32) : 9,675천원($600\text{천원} \times 645\text{m}^2 \times 0.025$)

· 문산읍 청사진입로 임차료(22-2) : 4,660천원($400\text{천원} \times 466\text{m}^2 \times 0.025$)

· 문산읍 청사진입로 과년도분 임차료(22-2) : 10,186천원

· 문산읍 청사진입로 토지매입비 : 279,600천원($600\text{천원} \times 466\text{m}^2$)

□ 검토사항

○ 금년 제출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문산읍 청사진입로인 문산읍 문산리 22-2번지의 466m^2 에 해당되는 토지를 279,600천원으로 취득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음.

○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문산읍 청사진입로인 문산리 22-2번지를 2000년도 취득하면서까지 2000년도 예산안에 동 부지의 임차료인 4,660천원을 반영한 사항.

· 취득부지인 문산리 22-2번지 임차료가 '99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음에도 동 부지의 임차료 관련 과년도분 임차료 10,186천원을 반영한 사항.

- 취득부지인 문산리 22-2번지 토지매입비 산출근거가 ㎡당 단가가 6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99년도와 2000년도는 임차료 기준단가를 ㎡당 400,000원으로 예산상에 부기되어 있는 사항.

5.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 (예산서 295p)

□ 검토사항

-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는 동 특별회계 세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음.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 사항별 설명서 54페이지에 나타난 동 사업의 세부 사업량과 2000년도 세입예산 22페이지에 나타난 내용,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 : 974,676천원(4,870천원×200평)
 - 사무실 : 1개소/20평
 - 점포(식당, 스넥코너) : 6개소/180평
 - 편의시설 : 화장실, 휴게소, 조경시설
- 통일동산 주차장내 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
116,040천원 (9,670천원×12월)
-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액 : 1,392,000천원
 - 경상예산 : 17,744천원
 - 사업예산 : 40,432천원
 - 기타(주차장 조성 재원적립금) : 1,319,904천원
 - 예비비 : 13,920천원

○ 상기내용을 토대로 다음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파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해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비중 사무실 1개소에 대한 비용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 통일동산 주차장내 식당 및 휴게소 임대료가 116,040천원임에도 8.4배 가까운 974,676천원이라는 금액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 여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 파주절경 미술작품 병풍 제작 (예산서 310p)

□ 검토사항

- 파주절경 미술작품 병풍제작비용으로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면 미술협회 파주지부에 의뢰하여 파주의 아름다운 절경을 화폭에 담아 병풍으로 제작하여 파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과연 이 미술 작품이 파주 홍보자료로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2. 관광파주 영상홍보물 제작 (예산서 313p)

□ 검토사항

- 관광파주 영상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음.

영상홍보물 한 개당 단가로 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영상 홍보물과 영, 중, 일 번역 홍보물까지 제작할 수 있는지와 이런 낮은 비용으로 만들 경우 충분한 홍보 효과보다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3. 전쟁 50주년기념 안보관광 기념품 제작 비용 (예산서 313p)

□ 검토사항

- 전쟁 50주년 기면 안보관광 기념품 제작비용으로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도 이 예산의 구체적인 용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기념품을 제작하는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4. 민북 지역 관광지 조성 용역비 (예산서 313p)

□ 검토사항

- 민북지역 관광지 조성 용역비로 약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용역비의 구체적인 사용내용 및 동 용역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5. 체육진흥기금 적립 (예산서 319p)

□ 검토사항

- 체육진흥기금 적립액으로 1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용도로는 동 조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2.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3.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4. 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
5.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 현재 체육진흥기금의 사용용도는 체육회사무국 운영 경비 지원액만으로 연간 3천8백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기타 이자수입은 사용하지 않고 있음.
현 적립금 약 8억원에 따른 이자수익은 년 평균 6천만원 정도인데 동 기금으로 타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기금의 경우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시금고의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 기금의 예금 상품명과 이율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어 짐.